

식자재 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① 이 조건은 (사)보현재단 보현전문요양원이 행하는 식자재 물품구매계약에 적용된다. (사)보현재단 보현전문요양원을 "구매자", [선정된 업체]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6년 07월 0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한다. 또한, "구매자"의 식당 운영사업이 중단되거나 "계약상대자"의 식자재 가격이 시중가격에 비해서 비싸거나 납품 식자재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계약은 "구매자"의 판단에 따라 자동 해지될 수 있다.

제3조(단가) 단가는 농수산물의 시세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이 단가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매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공급방법) ① 물품의 발주는 "구매자"가 2일 전까지 당일 납품목록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구매자"가 제시한 납품요청에 의거 매일 지정장소에 공급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③ 물품 검수 담당자가 물품 검수 시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 납품을 지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구매자"의 급식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재 납품을 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계약상대자"는 "구매자"가 발주한 식자재를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납품시간에 "구매자"의 지정장소에 운반까지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는 식자재 공급에 있어 제품의 특성과 계절에 맞게 신선도 및 품질유지를 위한 최적의 운반수단을 사용하고 납품상의 문제가 발생 시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한다.

제6조(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사용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구매자"가 지정한 검수담당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자재를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 시 검수담당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7조(검사) ① "구매자"는 자체 기준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구매자"는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검수) ① 식자재는 검수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 물품을 수령한 때에 완료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구매자"에게 공급한 식자재는 검수 시 합격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식자재 중 식자재의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기준에 미달 또는 불량품이 발생하거나 주문한 물품이 아닐 때 "구매자"는 식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할 수 있다. 이때에 소요되는 경비 등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고, "계약상대자"는 "구매자"가 요구하는 식자재로 제3조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5조 등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상 및 제반 치료비와 소요 경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사고 발생일부부터의 계약을 "구매자"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제9조(변상 및 사고책임) ① 납품지연, 불이행 등으로 "구매자"가 식당 운영사업을 계획대로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납품지연 또는 불이행이 반복될 경우 "구매자"의 일방적인 해약에도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식자재 납품기간 중 식중독 및 유사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민·형사상 책임과 사고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재난, 재해, 전염병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구매자"가 요양원 운영을 중단하여 물품 발주가 이루어지지 못해도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0조(대금정산)① "구매자"는 "계약상대자"가 1개월간의 식자재 납품 계약 이행을 완료하면 당월말일 또는 익월 10일전까지 카드 또는 계좌 송금으로 대금을 정산하여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매자"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제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계약해지) ① "구매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 규격(품질, 양) 미달,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3. 지정된 시간(오전 8시30~9시 30분)과 장소(지하1층 식당)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4.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냉동 탑차 가동하여 운송)
5. 제6조에 의거 검사결과 부적합할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경우
7.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경우
8.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납품이 3회 이상 지연이나 거부된 경우
9. 납품시간 지연이나 일부 품목 지연 납품 등으로 3회 이상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10. 납품 기사가 기관 측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납품기사는 위생적인 복장을 하고, 급식실의 기구를 허락 없이 사용하지 말아야 함.)
11. 감독청의 지시가 있는 경우
12.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마스크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② "구매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 자격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12조(지체상금) 물품을 납품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대가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의무양도 등)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다.

제14조(승락사항) ①"계약상대자"은 식자재를 납품함에 있어서 제반 규정사항을 준수한다.

②계약 후 관계자가 위생 및 제반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 . 점검시 비위생적이고 원활한 식자재 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조문해석 및 기타)①본 계약에 관하여 "구매자"와 "계약상대자"간 조문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는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의 발생 시에는 "구매자"의 해석에 의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구매자"가 요청하는 식자재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2026년 06월 23일

(사)보헌재단 보헌전문요양원장